

원유 및 석유제품의 수입 추천 요령

통합공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수입추천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.

1998년 1월 6일

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장

제 1조(추천 대상품목)

통합공고 별표 2의 품목별 수입요령상 해당품목으로 한다.

제 2조(수입 추천대상자)

석유수입 추천대상자는 석유사업법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의 등록을 한 자와 동법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 수출입업을 등록한 자(이하 “석유수출입업자”라 한다)로 다음 각호에 정하는 자로 한다.

- ① 원유, 휘발유·등유 및 그 조제품, 경유, 중유 : 석유수입업자
- ② 프로판 및 부탄 :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한 수입 계약승인을 받은 자

제 3조(포괄추천)

- ① 협회장은 수입추천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월단위로 수입물량을 유종별로 포괄추천할 수 있다.
- ② 포괄추천을 받고자 하는 자는 매월의 유종별 수입계획을 전월말일까지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포괄추천을 받은 자는 매월 5일까지 전월 수입실적을 협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협회장은 포괄추천을 받은 자의 수입계획이 변경되어 당해월에 수입 추천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개별적으로 추천한다.

제 4조(추천검토사항)

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입 추천한다.

① 연도별 석유수급전망에 관한 계획

②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제 2조 제 1항 각호 및 동조 제 3항의 업체별 계획

③ 기타 수급전망에 관한 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사유 등

제 5조(구비서류)

- ① 수입추천신청서 3부
- ② 물품매도확인서 또는 수입계약서 사본 1부(포괄추천시 생략)
- ③ 수입대행계약서 1부(수입대행시에 한함.)
- ④ 월별 유종별 수입계획서 1부(포괄추천시에 한함.)

제 6조(수입추천서의 반납)

수입추천서 재발행 신청시와 수입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당초 추천서를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7조(처리기간)

추천서 접수후 8근무시간 이내로 한다.

제 8조(보고)

협회장은 월별 및 매 분기별 수입추천실적을 매 익월 및 매분기 15일 이내에 통상산업부 장관에게 보고한다.

부칙

제 1조(시행일)

본 요령은 1998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포괄 수입추천신청서

처리기간

8근무시간

대한석유협회장 귀하

대외무역법 제 15조 및 통합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포괄수입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신청인 업체명 _____

②위탁자 업체명 _____

대표자명 _____ (인)

대표자명 _____ (인)

주소 _____

주소 _____

③신청내용

HS 부호	품명	규격	수량	비고

④추천조건

유효기간 : 만료일 199 . . 까지

상기품목에 대한 포괄수입을 추천함.

199 년 월 일

대한석유협회장

수입 추천신청서

처리기간

8근무시간

대한석유협회장 귀하

대외무역법 제 15조 및 통합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포괄수입추천을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①신청인 업체명 _____

②위탁자 업체명 _____

대표자명 _____ (인)

대표자명 _____ (인)

주소 _____

주소 _____

③신청내용

HS부호	품목	규격	수량	단가	금액	수입지역	비고

④추천내용

유효기간 : 추천서 발행일로부터 1년간

상기품목에 대한 수입을 추천함.

199 년 월 일

대한석유협회장